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4. 7.

목 차

| | |
|----------------------|----|
| I. 총칙 | 3 |
| 1. 과업의 목적 | 3 |
| 2. 과업의 개요 | 3 |
| 3. 과업의 일반사항 | 3 |
| II. 지하안전평가 | 7 |
| 1. 일반사항 | 7 |
| 2. 세부지침 | 8 |
| III. 성과품 | 12 |
|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2 |

I.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으로 지하안전 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나. 위치 : 과천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4-8획지

다. 대지면적 : 2,557㎡

라.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과 과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마. 과업주요내용

1) 지하안전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2) 지하안전평가 승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위한 제반 업무 ※ 현장조사는 설계용역사와 과정 및 결과 등을 협의 및 협조하여 진행

3) 본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향후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그에 따른다.

3. 과업 일반사항

가.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 착수계
-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첨부)
- 다) 참여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첨부)
- 라) 예정공정표
- 마) 용역비 산출내역서
- 바) 보안각서
- 사)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부공정계획서
-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3)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 5) 성과품 제출 계획서
- 6)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가) 현황 조사·분석 완료 시
- 나) 업무 협의·심의 시
- 다) 관계기관 협의·심의자료 작성 시
- 라) 공정보고 시
- 마) 성과품 작성 시
- 바) 준공 시
-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기보고

계약상대자는 추진내용, 공정현황, 수행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또는 주요 내용 변경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약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바. 참여기술자의 교체

-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보안 및 비밀 유지

-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의 보안 각서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2) 용역 과업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여야 한다.
- 5)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 7) 관련법령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소각한다.

자. 기타사항

-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2)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고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3) 본 과업 내용(설계도서, 자료 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타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본 과업의 완료 후에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재검토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의 완료 후에 누락된 분야 및 추후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변경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 완료 후에라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

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9)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10) 계약의 해지 및 중지 명령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자에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용역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간접비 및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II. 지하안전평가

1. 일반사항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등 관련법령에 의거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할 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국토관리청 지하안전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지하안전평가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주변 관련 공사를 검토하여 본 과업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행하여야 한다.
- 자. 지하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차.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 카.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타. 지하안전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계수, 수치 등 관련자료 사용·선정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파. 과업수행의 공정은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련 공정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지시사항·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 본 과업수행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또한 동일하다.

2. 세부지침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요약문
-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4) 지반 및 지질 현황
-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6) 지반안전성 검토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8) 종합 평가 및 결론
- 9) 부록

나.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1) 요약문

-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 나)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다)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 마) 지하안전확보 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바)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나)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다) 지하안전평가 실시기간을 근거 포함하여 기재한다.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여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4) 지반 및 지질 현황

- 가) 기존자료 조사는 지반조사 관련 자료,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 나) 현장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지질현황 검토(지형분석, 지질특성분석)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 분석(시추정보, 지질정보 및 지하수정보, 지하시설

물,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활용)

· 시추조사(기존자료 조사)

※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수행

· 투수시험(지층조건에 따라 투수계수 관련 현장시험)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다)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라)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바)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한다.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가)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나)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다)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라)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6) 지반안전성 검토

가)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나)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을 검토한다.

- 흠막이 가시설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거동 분석 후 벽체 배면의 수평변위 및 침하 등 검토
- 히빙(heaving)에 대한 검토
-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검토

- 다)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 발생으로 인접구조물의 손상유무 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
 - 연도별 조사를 통한 구조물 파악 및 수치해석 수행
- 라)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 마)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 사)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가)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과 운영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수립하여야 한다.
- 나) 수립된 계획·수립은 계획·수립항목, 계획·수립수량, 계획·수립빈도, 계획·수립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한다.
 - 체계적인 계획·수립관리 시스템 구축
- 다)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 굴착영향 범위 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 라)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9) 부록

- 가)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 나)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다)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조사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 라)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 마)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Ⅲ.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가.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 3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나.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
- 다.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
| 지하안전평가서 | 10부 | USB 포함 |
| 현황조사 관련 자료 | 1식 | |
| 기타 관련 자료 | 1부 | |

【서식1】

보 안 각 서

1. 용역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4. 위 사항을 위배하여 귀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 및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과천도시공사 귀하

【서식2】

월간 공정 보고

1. 용역명 :
2.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 구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 . . ~ . . .) | 비고 |
|------|----------------------------|-------------------------|
| 첫째주 | |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
| 둘째주 | | |
| 셋째주 | | |
| 넷째주 | | |
| 다섯째주 | | |
| 익월 | 공정 지연 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과천시공사 귀하